



환 · 경 · 관 · 련 · 질 · 의 · 응 · 답

측정대행업 신청시 기술인력 관련

Q

수질측정대행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질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별표7참조)

현재 수질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공통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고 허가를 받은 경우, 수질측정대행업을 신청 할 때 관리대행기관의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나요?

A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의 비고 제4호에는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등록 받은 자가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 등록된 기술능력이 신청하고자 하는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과 공통되는 부분에 한 하여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정폐기물(폐석면) 보관기간

Q

저희 회사는 지정폐기물로 폐유가 연10톤 정도 발생해 45일마다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시적인(3개월 정도) 공사로 인해 폐석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처리허가를 득했고 관할구청에 지정폐기물 변경신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발생량이 월100킬로그램도 안되고 기존에 폐유를 처리하던 업체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아 또 다른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기로 하였는데 석면의 보관기일이 60일로 규정되어있어 처리를 하려고 하니 너무 양이 작은 관계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차피 1개월만 더하면 작업이 끝나는 데도 보관기일을 준수하려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운반비 가 더 많이 나오는 입장입니다.

연발생량이 3톤미만의 지정폐기물은 보관기일을 1년 내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저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총발생량은 3톤이 넘으나 일시적인 작업으로 발생되고 또한 처리업체도 다른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전부 흡산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으로 보아 3개월간의 작업이 끝

난 후에 일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법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각이 존재해 현장에서 일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원리적인 법규정보보다 보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1년간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석면 등)이 3톤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보관개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석면의 양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지정폐기물고 합한량이 3톤이상 배출된다면 폐석면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적산전력계 설치여부

Q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지시설로 원심력 집진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가동하면 집진시설도 동시에 가동이 되는데 이럴 경우 적산전력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소각로의 가동여부는 자동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기록되고 있는바 적산전력계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A

적산전력계는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과 방지시설이 동일한 전원설비를 사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및 중지 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전원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Q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은 폐기물 발생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해 오고 있으나, 소량배출업소인 까닭에 매일 정확한 발생량을 계량하기 어렵고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시 정확한 배출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에 작성요령에 있어 매일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당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작성하여야 합니다.

극히 소량 발생하여 발생량을 계량하기가 어려울 경우 발생량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시설(SILO)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Q

당 현장은 고속도로 시설사업 현장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하고자 하려고 시멘트 저장시설(용적265m³×1기)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저의 회사가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기배출시설이 해당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시설이라도 업종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비고 13에서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으며, 동 별표 제14호 공통시설중 용적 50m³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저장 시설은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폐파렛트(폐목재) 처리

Q

당사에서 제품 적재시 발생하는 폐파렛트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보내 재활용하였으나, 당사에서 발생하는 폐파렛트 수량이 늘어나서 폐목재 재활용 처리업체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폐파렛트를 재활용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한때 배출업체인 당사에서 득해야 할 인허가 조건(예를 들어, 사업장폐기물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할 사항인지, 사업장폐기물 신고를 한다면, 폐파렛트의 폐기물 명을 무엇인지 등)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사민원을 검색 할 결과 폐파렛트의 경우 인계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의회신 내용을 보았는데, 폐파렛트의 경우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발생하는 폐파렛트는 물품 적재시 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질은 묻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A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파렛트의 처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서작성 대상은 아님.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RFID 사용

Q

일반의원에서 RFID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인계서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RFID관리 시스템에 의해 등록된 배출정보나 인계정보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해당 관청에서 점검이 나오면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기록·보존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전산처리기구(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RFID시스템의 경우 또한 본 시스템의 이용으로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상에 기입해야할 내용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상에 입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절연유 PCB함유여부 측정결과

Q

폐변압기의 PCB함유여부를 측정한 결과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반대로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폐절연유에 대한 PCBs 농도를 분석한 결과, PCBs를 2 ppm 미만으로 함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유로 분류되며 폐유로서 적정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PCBs를 2 ppm 이상으로 함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PCBs 함유 폐기물로 분류되며 법상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하여야 합니다.

축산폐수 재활용 변경신고

Q

기존에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가 되어 있는 재활용업체를 제가 인수하여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를 제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대표자 변경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변경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규제완화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관계기관과의 행정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가축분뇨의 재활용업은 없으며,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